

— 구미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지난 6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에 의거 주민발의 (YMCA사무총장 김영민 외9,095명의 연서)로 조례제정 청구에 따라,
- 학교급식법 제3조에 의거 우수 농·축·수산물을 학교급식식재료로 사용케 함으로써 성장기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 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「학교급식」이라 함은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·중·고등학교 에서 실시하는 급식과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아교육기관의 학생과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의한 영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.
- 「우수 농·수·축산물」이라 함은 지역(국내)에서 생산되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·수·축산물과 제조·가공된 식품으로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 규격품,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 규격품을 말한다.

- 「지원대상자」라 함은 학교급식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와 영유아보육법 제6조 제1호, 제2호에 명시된 보육시설 중 동법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시설기준과 운영여건을 갖춘 보육시설을 말한다.
- 지원방법은 지원대상자 중 유·초·중학교는 구미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하고, 영아 및 고등학교는 직접 지원토록 규정한다.
- 지원대상자의 선정,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, 지도·감독 등 학교급식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.

4. 참고사항

-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규칙
-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
-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

5.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에 의거 주민발의로 조례제정 청구에 따라,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임.
- 현행 학교급식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급식지원대상의 범위를 “초·중·고등학교 및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아 교육기관으로 한다” 라고 명시되어 있음.

그러나, 본 조례안(제2조제1항 및 제3항,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10조)에서는 급식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를 포함하고 있어,

학교급식법과 영유아보육법간 법체계와, 적용대상, 내용이 달라
근거법간의 충돌의 우려가 있고, 부서간 혼선이 예상됨.

○ 또한 조례안 제2조 2항중

~~우수농수축산물을~~ 지역(국내)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로 한정 하는것은
WTO 등에서 규정한 내용과 마찰의 우려가 있음.

○ 따라서 일부 내용을 수정·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
조례제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.